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44
----------	-------

발의연월일 : 2026. 6. 18.

발 의 자 : 조인철·주철현·박균택  
서천호·정일영·이개호  
한정애·정진욱·김 현  
정준호·어기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공공기관 지정해제(2024년),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 등 정책방향의 대전환을 겪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의 기술적·정책적 환경에서 연구기관의 운영 및 육성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청렴의무 및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여 책임경영을 확립하고 기존에 미흡하였던 육성 관련 조항을 대폭 보완함으로써 국가 임무 중심의 실질적인 연구 성과 창출과 기술 확산을 도모하고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자율적 운영체제 보장 및 내부통제 강화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불가 특례를 신설하여 자율적 운영체제를 마련함(안 제11조).
- 2) 감사위원회 설치(안 제22조) 및 경영공시 의무화, 임원 청렴의무,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안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을 법제화하여 책임경영과 내부통제를 강화함.

### 나. 전략적 임무 수행 및 성과 확산 특례 마련

- 1)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연구 운영·지원의 전략성을 강화함(안 제7조 및 제8조).
- 2) 연구자 창업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자의 주식 소유 등을 허용하는 이해충돌방지 특례를 신설함(안 제50조).
- 3) 창업기업에 대한 전용실시권 특례 등을 신설함(안 제55조 등).

### 다. 조직운영 및 기능의 유연성 확보

- 1) 부설기관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부설연구소’와 ‘지역조직’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및 부설기관 설립 절차를 명시함(안 제34조).
- 2) 연구회의 부설기관 운영 근거를 명시(안 제16조) 및 부설기관 실태조사 및 조직 폐지 요구 권한 신설함(안 제36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창의적·자율적 연구문화를 구축하고 책임경영을 확립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부설기관”이란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설치한 부설연구소, 지역조직 등의 조직을 말한다.
4. “부설연구소”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분야의 연구개발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부설기관으로서 연구기관과 동일 법인에 속하지만 조직운영 및 인사·재정 등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조직을 말한다.
5. “지역조직”이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국내에 설치한 부설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자율적 경영 보장 등)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재원 지원)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접수할 수 있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기본사업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 협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기본사업 운영 등)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정관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기본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본사업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정한다.

③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부합하는 경우 정부수탁과제 또는 기업수탁과제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연구회는 제3항에 따른 수탁과제 수행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연구기관에 알려야 한다.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연구회

### 제1절 설립 및 기능

제12조(연구회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13조(연구회의 책무) ① 연구회는 과학기술혁신 활동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수행되고 그 성과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육성 및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연구기관 간 유기적 연계와 통합적 협력을 추진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연구개발, 성과확산, 인력 교류 등에 있어 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연구회는 제15조제5호에 따라 협동 및 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융합연구사업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융합연구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④ 연구회는 인사·예산·평가·사업관리 등에 있어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 사항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연구회는 제15조제2호에 따라 연구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정

비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회 정관)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연구회 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행정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지원
  4. 연구기관의 평가
  5. 연구기관 간 또는 연구기관과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동·융합연구(이하 “협동·융합연구”라 한다)를 위한 지원 등
  6.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7.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8.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
  9. 연구기관의 인재정책을 위한 지원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11.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연구
- 제16조(연구회 부설기관) ① 연구회는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부설기관의 설치, 운영, 통합, 해산 절차 및 법인전환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17조(연구회 지역조직) ① 연구회가 부설기관으로 지역조직을 설치

· 운영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조직의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 적정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의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적정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분석의 기준 및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적정성분석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절 임원

제18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⑥ 감사는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연구기관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임원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사장,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임원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4조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체상·정신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법률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현저한 손해를 입힌 경우
5.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3절 주요기구

제21조(이사회)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
2.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사업계획의 수립·승인 및 변경
3.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 및 결산
4.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정관의 변경
5. 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승인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
10.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11. 협동·융합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12.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감사기구)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한 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 및 감사단을 두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사업무와 관련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세부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감사단은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지원조직으로 감사에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제41조제2항에 따라 원장에게 위임된 연구기관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감사단 소속 전담인력을 연구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감사단의 운영 및 전담인력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사장이 정한다.

제23조(위원회 및 협의회) ①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기관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이사와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연구 기획 및 협동·융합연구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기관 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기획평가위원회, 경영협의회 및 연구개발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절 예산·결산과 회계

제24조(사업연도)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연구회 예산요구서 제출)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회 예산 및 사업계획 제출 등) ①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예산 및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및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원칙) 연구회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제28조(연구회 결산서 제출) ① 연구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9조(회계감사 등) ① 연구회는 매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결산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연구기관

#### 제1절 설립·해산과 조직

제30조(연구기관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원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⑤ 연구기관의 설립 및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연구기관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지 못한다.

제32조(연구기관의 책무) ① 연구기관은 과학기술혁신 활동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은 과학기술혁신 활동 수행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그 연구개발성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학문적 진실성을 확보하며, 그 국가·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③ 연구기관은 연구개발사업 등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기관 정관)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연구기관 부설기관) ① 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다만, 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부설기관의 설치, 운영, 통합, 해산 절차 및 법인전환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5조(연구기관 지역조직) ① 연구기관은 부설기관으로 지역조직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조직의 설치·운영계획을 연

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조직의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 적정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의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적정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적정성분석의 기준 및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연구회는 제2항에 따른 적정성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적정성분석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실태조사 및 조직 정비 등)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부설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기관에 부설기관의 운영 효율화,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연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연구기관 해산 등)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제65조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연구기관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

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기관의 목적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연구기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3. 해당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해산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산하거나 제21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제2절 임원

제38조(원장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상근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상임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 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원장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 제한) 연구회 이사회에서 제39조제2항에 따른 원장 선임계획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제41조(연구기관에 대한 감사) ① 연구기관 및 그 소속 임직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사는 제22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수행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감사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의 일부를 위임받은 원장은 수행 계획 및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절 예산·결산과 회계

제42조(사업연도) 연구기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연구기관 예산요구서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 연구기관의 예산 요구 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 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면 연구기

관의 다음 사업연도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한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 등) ①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해당 사업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은 연구회 제출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예산 및 사업계획은 연구회 제출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③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5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

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제46조(연구기관 결산서 제출)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회가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 중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결산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제47조(회계감사) ①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부담을 경

감하는 등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제4장 연구개발성과 확산

제48조(연구개발성과 소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에 따라 정한다.

제49조(연구개발성과 확산 지원 등)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이전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이해충돌 특례)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 및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는 제외한다)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이전하여 연구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당해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을 위해 소속 임직원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경우에는 제3호의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창업기업등에게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창업기업등에게 소속 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③ 연구회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속 임직원의 연구개발성과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51조(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① 연구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

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기술출자회사 설립 및 운영 특례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출자회사(이하 “기술출자회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출자회사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53조(산학 공동법인 설립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융합연구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자본, 현물 및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기술 등을 포함한다)를 출자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기준, 출자의 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연구자창업기업 설립 등) ① 연구기관 소속 직원은 단독 또는 공동(다른 연구기관에 소속된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이하 “연구자창업기업”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창업기업 설립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
2. 소속 연구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명백한 경우

③ 연구기관 소속 임직원은 연구자창업기업에 참여하고 주식 등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 임원이 연구자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연구자창업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발전 등에 기여한 연구기관 임직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연구자창업기업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창업 특례 등) ① 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 기술출자회사, 연

구자창업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대체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 기술출자회사, 연구자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전 기술에 대해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허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해당 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구기관은 허락 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은 연구성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또는 대체 징수의 기준·범위·절차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창업 후 직무발명 신고 등) 연구기관 임직원은 예비창업기간, 창업휴직 및 겸직기간 중에 발생한 연구기관 관련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 사실을 연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제5장 개방형 혁신 기반 구축

제57조(인력 교류 확대)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협동·융합연구개발

의 성과 제고, 연구지원의 효율적 추진 및 인력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속 인력 간 교류·소통·협력 등의 추진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연구기관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과의 협동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속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류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8조(과건, 겸직 및 휴직 등에 관한 특례)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1. 직무 능률을 저해하지 않을 것
2. 이해충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해충돌을 말한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소속 직원을 기술지주회사, 기술출자회사, 연구자창업기업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휴직·겸직 또는 겸임을 허용할 수 있다.

③ 휴직 중인 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속 직원이 휴직 기간의 종료, 기술지주회사, 기술출자회사, 연구자창업기업 등의 폐업, 인수 및 합병, 지분의 양도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에 복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복직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장 과학기술 인재 역량 강화

제59조(우수연구원 선정 등) ① 연구기관은 기관의 발전에 기여가 큰 고경력 연구자 활용 등을 목적으로 소속 직원을 우수연구원(이하 “우수연구원”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연구원의 정년, 선정, 처우, 운영 및 취소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60조(연수직 연구원 활성화) ① 연구기관은 주요 임무 분야의 신진 인력 양성 및 성장 경로 제공을 위해 박사후연구원, 석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인턴 등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원(이하 “연수직 연구원”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연수직 연구원이 차별받지 않고 건전한 연구문화에서 연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연수직 연구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구회가 정한다.

제61조(대학원대학 설립) ① 연구기관과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국가 과학기술발전과 산업 혁신을 주도할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은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이하 “국가연구소대학”이라 한다)라 한다.

③ 국가연구소대학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외에 다른 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연구소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의 자격·범위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연구소대학의 교원 임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소대학에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⑥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국가연구소대학의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가연구소대학의 운용재원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62조(국가연구소대학 학위과정 등) ① 국가연구소대학에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교과 및 학생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1조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의 학위수여,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이 경우 국가연구소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제63조(국가연구소대학 교원) ① 국가연구소대학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국가연구소대학은 인력양성을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설립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참여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립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소속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교원은 원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을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으로 본다.
- ⑤ 교원의 구분, 자격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 제7장 평가·진단 및 운영

제64조(연구회에 대한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의 제13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및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연구회에 대한 평가 절차, 기준 및 방식, 결과의 활용 및 부설기관의 설립·운영 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에

대한 점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회는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대상인 경우 상위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경영혁신)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운영과 자체 역량 및 사회적 책임성 강화 등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규정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경영공시)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기관 경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안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연구회 및 각 연구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연구회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③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경영공시와 통합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임원의 청렴의무 등)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임원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상근 임원에 대한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직무청렴계약(이하 “임원 직무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경영윤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9조(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임직원에게 대해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역량 증진, 안전하

고 건강한 공동체 실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0조(운영지침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4. 경영혁신 방안에 관한 사항
5.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1조(내부규정 운영·개선)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법령 및 그 하위 규정의 범위 내에서 기관 내부규정(이하 “내규”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법령의 변경 및 기관 내·외부 사정의 변경을 반영하여 매년 내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 제8장 보칙

제72조(감독관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감독관청이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3조(업무 위탁)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방법·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비밀유지 의무)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제29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제73조에 따라 연구회 또는 연구기관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동일 명칭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국가연구소대학이 아닌 자는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6조(준용규정)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중 “주무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제7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적법한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으로 인한 수익 활동은 직무관련 수뢰로 보지 아니한다.

제78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연구회 또는 연구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장 벌칙

제79조(벌칙) 제7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과태료) ① 제7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총장 및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교에 임명 및 임용 된 것으로 본다.

[별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30조제1항 관련)

기 관 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 한국식품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3. 한국기계연구원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 한국한의학연구원	15. 한국전기연구원
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6. 한국화학연구원
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 한국원자력연구원
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8. 한국재료연구원
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9.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1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